

2025 관세사 무역실무(이론+법규) 정오표

2024-07-11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60	첫째줄	상환	상환
173	상단 표	좌: 보증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우: 보증신용장통일규칙(SP98),신용장통일규칙(UCP600)	좌 :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통일규칙(SP98)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우: 화환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600)
174	4) 신용장금액의 지급 ②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의 채무자의 채무의 불이행에 의해서 지급의 동기가 발생하고, 그 경우 계정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다.	보증신용장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지급의 동기가 발생 한다.
256	2) 수취선하증권 둘째줄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본선의 입항전이라도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본선의 선적전이라도
281	(3) 책임원칙 1) 책임의 범위	함부르크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추정)과실책임주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함부르크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주원칙 을 채용하고 있으나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추정)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305	상단 박스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컨테이너(birdy-back):컨테이너를 철도에 실어 운송 • 항공운송+컨테이너(piggy-back):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실어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컨테이너(piggy-back): 컨테이너를 철도에 실어 운송 • 항공운송+컨테이너(birdy-back):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실어 운송
375	표 내 하단	자연의 회피(A voidance of Delay)	지연의 회피(A voidance of Delay)
670	제14조 전체 내용 변경	내용 삭제	<p>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p> <p>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 은행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 이 기간은 유효기일 내의 제시일자나 최종제시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취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p> <p>d.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p> <p>e.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p> <p>f. 신용장에서 누가 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이 없이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어떠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밖에 제14조 (d)항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시된 대로 그 서류를 수리한다.</p> <p>g. 제시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는 무시될 것이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p> <p>h.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p> <p>i.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p> <p>j. 수취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취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p> <p>k.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일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취자일 필요가 없다.</p> <p>l. 운송서류가 이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소유자, 선장, 용선자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p>

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